

제 1108 호
1985. 6. 11

발행인 : 서울특별시 시장 업무 담당
편집인 : 서울특별시 관 조 담당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고 시	
제 375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3
◎ 공 고	
제 337 호 : 서소문구역제 7 지구재개발사업공사완료	3
제 339 호 :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 징수조례개정안입법예고	4
◎ 구청공고	
동대문제 28 호 : 직인개각공고	5
◎ 사 령	

공										
발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37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1985.6.11

서울특별시
다 음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주체: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02-42 ㈜길훈건설 (대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02-31 박길훈)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변경 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76-3 외 9필지
	변경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76-3 외 21필지
면 적	변경 전	7,640.76 ㎡
	변경 후	8,302 ㎡
규 모	변경 전	아파트 5층 3동 100 세대
	변경 후	아파트 5층 4동 140 세대

4. 사업시행기간
'85.5 - '86.4.31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337 호

서소문구역제 7 지구재개발사업공사완료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 호 ('82.1.28) 로 시행인가된 서소문구역제 7 지구 재개발사업이 공사완료되었기 도 시재개발법 제 48 조 제 3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5.6.11

서울특별시

1. 사업의명칭: 서소문구역제 7 지구 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 중구서소문동 75-22 일대
3. 시행면적: 2,693.5 ㎡
4. 시행자 주소 성명

- 주소 : 중구 서소문동 75-22
- 성명 : 유원건 설(주) 대표이사 최 효 석

5. 완료내역

가. 토지

- 대 지 : 2,153.4㎡
- 공공용지 : 540.1㎡

나. 건물

- 건축면적 : 846.48㎡ (건폐율 39.16%)
- 연 면 적 : 22,041.07㎡ (용적율 667.86%)
- 층 수 : 지상 17층, 지하 4층
- 주 용 도 : 업무시설

6. 준공도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제 339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 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 13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5.6.11

서울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

2. 개정의 주요내용 및 취지

가. 공유수면 점용료등 징수조례와 형태가 동일한 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등의 징수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나. 점용료등 산정방법 (제 3조)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 면적단위가 1(평)미만은 1(평)으로 한 현행 규정을 0.5㎡이상 1㎡로, 0.5㎡미만은 계산 아니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다. 점용료등의 감면 (제 4조) 공용 공익 목적으로한 비영리사업과 재해로 인한 감면규정은 있으나 감면대상에 따른 감면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 규정을 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별 감면율을 규정하려는 것임.

라.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 5조) 점용료등은 일시에 전액을 선납 하여야 하는 현행 규정을 회계년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허가년도분은 허가시, 그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3월이내 징수토록 개정하려는 것임.

마. 증감징수의 규정의 폐지 교통의 전부 기타사정에 의하여

2배 또는 2분의 1 범위내에서 증감 장수할 수 있는 현행규정을 폐지 (제 22조 단서)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5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 (참조 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4. 기 타
 점용료 산정기준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치수과 (362-3817, 362-3819)로 문의하기 바란다.

구청 공고

◎ 동대문구공고제 28 호

직인 개각공고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직인 및 제인을 개각하였기 동규칙 제6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5.6.11

동 대 문 구 청 장





1. 직인명

- 상봉제 2 동장인 및 제인
- 청량리 제 1 동장의 인 및 제인
- 면목제 5 동장직인 및 제인

2. 사용개시 및 구인제인일자 :

1985년 7월 1일

3. 인 영

구 분	개 각 인		제 기 인	
	직 인	제 인	직 인	제 인
인 영				
공인명	동대문구 상봉제 2 동장의 직인 및 제인			

구분	개각인		폐기인	
	직인	제인	직인	제인
인영				
공인명	동대문구 청량리제 1동장의 직인 및 제인			
구분	개각인		폐기인	
	직인	제인	직인	제인
인영				
공인명	동대문구 면목제 5동장의 직인 및 제인			
사 령				
© 1985년 6월 11일자 산업경제국상공과 지방행정주사보 권 오 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85년 6월 11일자 형제189호 총 무 처 농 립 기 좌 최 광 빈 서울특별시 내무국 서울특별시장		